

폐천부지 등 교환(양여)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	-----	------	-----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위치
	하천명
	하천으로 된 면적
	폐천부지 등의 면적
	폐천(예정)연월일
교환(양여)신청면적	

「하천법」 제85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천부지 등의 교환(양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귀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첨부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 확인사항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그 내용을 확인합니다.	수수료 없음
	1. 위치도(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의 처리 과정에서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구적도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교환의 경우로서 신청이 경합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공사비정산서(시·도지사가 양여를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 지적도 2. 교환하거나 양여받으려는 토지의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 등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수



검토



결재



증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유역환경청 · 지방환경청,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